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1233
----------	------

제출연월일 : 2010. 8. 2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 사실조사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 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 (안 제4조)
- 라.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자료

- 가.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나. 입법예고 : 2010. 6. 18. ~ 7. 7. - 의견제출 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